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 11. 23 선고 2022가단105700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금정
담당변호사 이중섭

피 고 A
변 론 종 결 2022. 10. 19.
판 결 선 고 2022. 11. 23.

주 문

1. B(개명 전 이름: C, (주민등록번호 1 생략)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1. 12. 체결된 협의분할계약을 9,733,333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9,733,333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갑 제1호증부터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등기과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 D에 대한 각 제출명령 회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채권

원고는 2014. 3. 3.경 B과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B은 원고에게서 신용보증서를 교부받아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E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았다.

B은 사업자 휴폐업으로 신용보증사고를 일으켰고, 원고는 2017. 4. 18. E은행에 91,122,742원을 대위변제하였다. B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수위약금은 90,730원이다.

원고는 B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9. 10. 25. 'B은 원고에게 91,213,472원(= 대위변제금 91,122,742원 + 미수위약금 90,730원)과 그중 91,122,742원에 대하여 2017. 4. 18.부터 2019. 3. 31.까지는 연 10%, 그 다음 날부터 지급명령 송달일까지는 연 8%,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9. 11. 20. B에게 송달되고 2019. 12. 5. 확정되었다(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차전42059호).

나. B과 피고의 상속재산분할협의

고 F(개명 전 이름: G, 이하 'F'라 한다)는 피고(개명 전 이름: H)와 혼인하여 딸인 I(개명 전 이름: J), K(개명 전 이름: L), M, N(개명 전 이름: O), P와 아들인 B을 두었다.

F와 피고는 2002. 1. 11. 부산 사하구 Q건물, R호를 매수하여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그중 F의 1/2 지분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다.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F는 2018. 2. 4.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피고와 I, K, M, N, P, B이 있었는데, 상속지분은 피고가

3/15 지분이고, I, K, M, N, P, B이 각 2/15 지분이다.

피고와 I, K, M, N, P, B은 2019. 11. 12.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의 단독소유로 하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위 상속재산분할협의 중 B과 피고가 B의 상속지분인 2/15 지분에 관하여 한 부분을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8. 2. 4.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B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지분인 2/15 지분 외에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고,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 등 소극재산이 있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피고는 2019. 11. 25. S에게 이 사건 부동산과 자신의 1/2 지분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

이 사건 부동산의 현재 가액은 7,300만 원(= 1억 4,600만 원 × 1/2 지분)이고, 그중 B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9,733,333원(= 7,300만 원 × 2/15 지분, 원 미만은 버린다)이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B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데도 2019. 11. 12. 피고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지분인 2/15 지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참조). 채무자인 B의 사해의사를 인정할 수 있으며,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지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 가액에 해당하는 배상을 명하여야 한다. 피고는 사해행위인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이후에 다른 사람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으므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다.

B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1. 12. 체결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 목적물인 B의 상속지분 가액에 해당하는 9,733,333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9,733,333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F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피고와 B 등 상속인들은 피고의 거주 문제를 논의하였는데, 그 결과 피고가 거동이 불편하고 F와 수십 년을 지내온 거주지를 옮기는 것에 반대하여 피고가 거주하는 것에 불편함이 없도록 가족회의를 거쳐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받아 계속 거주하는 것으로 합의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B은 출가하여 가정을 이루어 살았고, 피고는 F와 단둘이 살았으므로 자식인 B의 생활에 관여한 바 없고, B도 부모에게 어려움을 호소한 적이 없다. 피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경제적인 여유가 있었으므로 B의 채무가 있었다고 한다면 B의 상속지분을 먼저 정리하는 등 별도의 조치를 하였을 것이다. 피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고, 피고의 악의가 추정된다는 원고의 주장에도 동의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위에서 보았듯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B의

사해의사를 인정할 수 있으며,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이와 달리 수익자인 피고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선의였다는 사실은 피고 스스로 증명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를 살펴보아도 피고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선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사 장수영

(별지)

목록

1동의 건물의 표시

부산 사하구 동[도로명 주소] 부산 사하구

철근콘크리트 슬래브지붕 4층 공동주택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면 적: 호 75.47㎡

대지권의 표시

토지권의 표시: 부산 사하구 대 407㎡

대지권의 종류: 소유권대지권

대지권의 비율: 8분의 1

중 1/2 지분

끝.

